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 및
지원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4년 7월 5일

· 회부일자 : 2004년 7월 5일

다. 상정 일자

○ 제230회 정례회

·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04. 7. 15) 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통상국장 정 정 순)

가. 제안 이유

- 바이오산업을 21세기 지역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하여 기 설립된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를 「재단법인충청북도바이오산업진흥재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전통의약 및 보건의료산업 육성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 골자

○ 제명변경

-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 「재단법인충청북도바이오산업진흥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 법인명칭을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
→ “재단법인충청북도바이오산업진흥재단”으로 변경 (제2조)

- 사업의 범위를 전통의약 관련산업의 지원·육성에서 전통의약 및 보건의료 관련산업 등을 포함한 생명과학산업의 연구개발·창업보육 지원 등으로 확대하여 보건의료센터 관련산업의 지원·육성이 가능토록 함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 상 업)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1세기 바이오산업을 충북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고부가가치화 하기 위한 것으로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사업내용에 따라 산발적으로 설치한 재단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 재단을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04. 3. 4설립)"와 향후 설치할 "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사업장 위치가 서로 다른 '전통의약산업센터'와 “보건의

료산업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 수행해 나가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생 략 "

6. 심 사 결 과 : " 원안 가결 "

7.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 없 음 "

9. 별 첨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 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를 “바이오산업진흥재단”으로 한다.

제1조중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의약품산업 등”을 삭제하고, “위한”을 “위하여”로 하며, “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를 “바이오산업진흥재단”으로 한다.

제2조중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를 “재단법인충청북도바이오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제4조제1항제10호, 제4조제1항제12호, 제4조제2항, 제6조, 제7조, 제8조중 “지원센터”를 각각 “재단”으로 한다.

제5조중 “지원센터는”을 “재단은”으로 하고, 다음 앞에 “생명과학과 관련한”을 삽입하며,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학·연 공동기술 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사업
2. 연구개발 시설의 공동이용 및 개방 실험실 운영
3. 정보유통망 구축과 기술·경영지도 및 교육사업
4. 창업보육, 관련기업의 유치 및 육성사업
5. 제품의 성능시험 및 검사, 품질평가 등의 사업
6.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9조 및 제10조중 “지원센터가”를 “재단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1. <u>전통의약품 연구개발 지원</u></p> <p>2. <u>한방신약 연구개발 지원</u></p> <p>3. <u>산·학·연 공동기자재 활용 및 교육지원 등</u></p> <p>4. <u>(신 설)</u></p> <p>5. <u>(신 설)</u></p> <p>6. <u>(신 설)</u></p> <p>7. <u>(신 설)</u></p> <p>제6조(재산출연) <u>지원센터</u>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출연금으로 한다.</p> <p>제7조(운영비 등 지원) 도지사는 <u>지원센터</u>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u>지원센터</u>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p> <p>제9조(잔여재산의 귀속) <u>지원센터</u>가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 귀속된다</p> <p>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u>지원센터</u>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 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p>	<p>1. <u>산·학·연 공동기술 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사업</u></p> <p>2. <u>연구개발 시설의 공동이용 및 개방 실험실 운영</u></p> <p>3. <u>정보유통망 구축과 기술·경영 지도 및 교육사업</u></p> <p>4. <u>창업보육, 관련기업의 유치 및 육성사업</u></p> <p>5. <u>제품의 성능시험 및 검사, 품질 평가 등의 사업</u></p> <p>6. <u>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사업</u></p> <p>7. <u>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u></p> <p>제6조(재산출연) <u>재단</u>.....</p> <p>.....</p> <p>제7조(운영비 등 지원) <u>재단</u></p> <p>.....</p> <p>.....</p> <p>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u>재단</u></p> <p>.....</p> <p>.....</p> <p>제9조(잔여재산의 귀속) <u>재단</u>이</p> <p>.....</p> <p>.....</p> <p>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u>재단</u>이</p> <p>.....</p> <p>.....</p>

관련법령 발췌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한다.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 또는 무상 대부한다.

□ 지방재정법 제14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겸임)

-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특수 전문분야의 일반직공무원·대학교수등 교육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 기타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 기타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특수전문분야의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 개발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